

2021년도 제3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1. 11.(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314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953건(안건번호 제2021-155689호~15664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55689호~155693호(순번 1번~5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최신 만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55689호~155693호(순번 6번)는 △△△ 블로그에서 영상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55695호(순번 7번)는 악보 전문 판매 사이트에서 악보를 유료로 판매한 사안으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영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관련 사안 일체에 대해서 전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안건번호 제2021-155696호~155697호(순번 8번~9번)는 △△△ 및 ○○○○ 블로그에서 음악저작물을 후원 방식으로 공유하면서 공유 불법복제물의 트랙리스트를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 자체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없으나 불법복제물의 공유로 영리를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체적으로 인정되는 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

함.

안전번호 제2021-155698호(순번 10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음악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체 서버를 이용하여 음원의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는 점, 합법시장 서비스의 UI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155699호~156641호(순번 11번~953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전 게시물 1,77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373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전번호 제2021-17008호~17380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 총 373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26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31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17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953번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5번은 민원인(실명 1명)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만화를 유료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등 5건을 각각 50포인트에서 90포인트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5개 게시물임.

(순번 1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1권~4권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5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위원: 정당한 권리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5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6번은 민원인(실명 1명)이 신고한 건임. 불법 복제한 영화를 네이버 블로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블로그에서 영화 ‘★★★★★★
★★★★★★’ 총 1개 게시물임.
(순번 6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영화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6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 '유튜브 연주 영상에는 저작권자의 CID가 게시되어 있어, 유튜브 약관에 따른 권리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 밑에 임베디드 링크 형태로 게시된 유튜브 영상에 대한 설명임. 가끔씩 유튜브 영상의 공유를 불법 복제물이라고 제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 부분 또한 검토하였음.

이 유튜브 게시 연주 영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음. 첫 번째로, 해당 연주 영상 자체는 CID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유튜브의 약관에 의해서 정당하게 원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두 번째로는, 타인이 채보하여 연주한 곡인데도 CID에 감지되었다, 즉 편곡이 없이 원곡과 거의 동일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음.

- A 위원: 유튜브 약관에 따른 권리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악보에 대해서 권리처리가 없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악보에 대해서는 권리처리 없이 무단 채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튜브 내에서 연주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CID가 부착되면 권리자가 광고수익을 수취하기 때문에 권리 처리가 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음.

- A 위원: 유튜브는 누가 음악을 올리더라도 유튜브가 이용 허락을 대해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저작권자가 직접 CID를 등록하고 차단, 광고 여부를 미리 선택하면 CID가 감지된 영상에 대해 차단을 하거나 광고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음.
- A 위원: 그러함. 영상에 광고를 붙여서 저작권자에게 광고료를 일부 나눠주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오진해 전문위원: 그래서 CID가 붙은 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고 있다는 것은 유튜브 내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음.
- A 위원: 유튜브 영상에 이용된 음악이 약관에 따른 권리 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겠음. 악보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올해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던 악보 사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음. 참고로 최근 1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악보 사례 전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의결하였음. 이 안건도 전체위원회에 함께 상정해 논의하실 수 있을 것 같음.
- A 위원: 제297회 1분과위원회의 안건과 본 안건의 구체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바로 의결하거나 함께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 위원

님들은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예전에는 악보 특히 해외 악보를 구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끼리 악보를 채보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지금은 합법적인 악보 시장이 엄연히 존재함.
- A 위원: 제297회 1분과 심의안건과 다른 점을 짚어보면, 본건 게시물은 악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고 편곡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원곡을 그대로 채보하였음. 대중가요를 편곡하여 무료로 제공한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 B 위원: 1분과 심의안건은 게시자가 편곡을 해서 편곡자로 등록을 마친 등의 사정이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은 했지만,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편곡자로서 등록을 한 것은 아님.
- B 위원: 그렇다면 그 역시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A 위원: 편곡자로서의 권리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했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B 위원: 원곡자 입장에서는 제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권리자가 제보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이 제보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본건은 익명의 민원인이 제보하였음. 참고로 기존 유사한 사례에 대해 가결하였던 제180회 심의위원회 안건은, 원저작권자에게 편곡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고 편곡 및 실연, 음반제작까지 한 권리자가 신고한 사안이었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그러면 순번 7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저는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저도 본 안건은 다른 사례와 차별점이 있어 가결 의견이지만, 1분과위원회에서 유사 사안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한 취지는 무엇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1분과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악보 사례에 대하여 전체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심의기준을 정립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음. 저희 분과는 이번 안건에 대해 가결 의견 쪽으로 위원분들이 의견을 모았지만, 다른 분과에서 악보 사안에 대해서 전체위원회로 회부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안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 사안 간의 공통점과 차별점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우리도 전체위원회로 회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공지란의 별도 게시물에 안내되어 있음.
- C 위원: '덕후'들 사이에서는 약속된 구조로 보임. 8번 및 9번 블로그의 운영자는 동일인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양쪽이 같은 후원사이트를 안내하고 있어 같은 사람인 것은 확실함.
- A 위원: 두 블로그 운영자가 후원사이트 내에 자신의 페이지를 개설한 것임.
- 오진해 전문위원: 참고로 해당 후원사이트 '●●●●'은 해외 사이트로, 시정권고 대상은 아님.
- A 위원: '●●●●'이 창작자를 후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플랫폼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월간 멤버십을 통해 팬들로부터 창작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 보통은 포스트에 그림, 글 등을 올리는 것으로 보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에 이를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만 링크는 아님.
- 오진해 전문위원: '●●●●' 링크가 들어 있는 게시물이 심의대상이었다면 저희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을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 자체는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음. 다만 경고는 필요하다는 의견임.

- B 위원: 이러한 불법정보는 우리가 본 심의대상 게시물 2건보다 더 많이 있을 것 같음.
- A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3천건 이상의 트랙리스트가 게시되어 있다고 적혀 있음.
- A 위원: 그러면 순번 8번~9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원안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의견임.
-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8번~9번의 게시물에 대해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순번 10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사이트 내에서 음원을 다운받거나 스트리밍으로 재생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체 서버를 이용하여 음원의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는 점, 합법 시장 서비스인 '▷▷'의 UI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8번~10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회원가입없이 바로 다운 받을 수 있는가?
- 오진해 전문위원: 가능함. 별도의 절차가 전혀 필요없음.
- A 위원: '○○'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음원을 불법 제공하는 사이트로 보이는데, OSP는 무엇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OSP 스스로 음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 A 위원: OSP 스스로 제공하는 것이면 시정권고가 제대로 도달할 수 있는가?
- 오진해 전문위원: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의결을 해 주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그러면 순번 10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0번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11번~95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프로그램,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출판 '정부 프란시스의 초상 (출판:텐북,시리즈)'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391번은 웹하드에서 출판 '정부 프란시스의 초상 (출판:텐북,시리즈)'을 50포인트에 제공 중임. 웹소설의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국내 웹소설로, 네이버 시리즈앱에서 정식이용 가능함.
(영화 '[중점](영화)더 하더 데이 폴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794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중점](영화)더 하더 데이 폴 (2021)'을 164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 분량인 2시간 14분 1초를 제공하고 있음. 2021. 10. 20. 공개한 영화임. 넷플릭스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11번~95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11번~953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프로그램,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1번~95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1-155689호~155693호, 제2021-155694호, 제2021-155698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155696호~155697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안전번호 제2021-155695호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고 안전번호 제2021-155699호~15664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20쪽부터 23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7008호~17380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3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3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1. 18.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위정현